

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도 의원

2. 찬 성 자 : 김근한 의원 외 5인

### 3. 제안이유

- 장기재직휴가의 최소 사용일수 요건을 완화하고 미사용 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휴가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일수 변경에 관한 사항(안 별표 5 제3호)
- 나. 장기재직휴가 이월에 관한 사항(안 별표 5 제4호)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번 아웃을 방지하고,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특별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현행 '5일 이상'의 의무사용 규정은 주말을 포함할 경우 최소 9일 이상의 공백을 강제하여, 당면 과업이 많은 실무자들에게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, 실제 2023년~2025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약 87%가 최소 기준인 5일만 사용하고 있는바, 이는 필요에 의한 휴가보다는 규정에 맞춘 휴가가 그간 주를 이루었음을 시사함.

#### ※ 참고자료-구미시청 장기재직휴가 사용현황(일수별)

구 분	합계 (명)	4일 이하	5일	6일	7일	8일	9일	10일
2025	571	22 <sup>(4%)</sup>	498 <sup>(87%)</sup>	10	7	3	2	30 <sup>(5%)</sup>
2024	471	16 <sup>(3%)</sup>	410 <sup>(87%)</sup>	10	6	4	4	21 <sup>(4%)</sup>
2023	514	14 <sup>(3%)</sup>	451 <sup>(88%)</sup>	7	6	6	2	28 <sup>(5%)</sup>

- 따라서 최소사용 단위를 3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연가와 연계한 유연한 일정 수립을 가능케 하여 휴가의 질적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(안 별표5 제3호)

- 미사용 일수의 이월제도 도입은 기존의 부득이한 소멸구조를 자기주도적 적립 구조로 전환함으로써, 장기적인 생애주기별 휴가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  
(안 별표5 제4호)
-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저촉됨이 없고, 별도의 재정수반 요인 없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타당한 시책으로 사료됨.
- 다만, 휴가 이월 및 최소 사용일수 완화로 인해 명절, 연말, 여름휴가와 같은 특정 시기에 장기재직휴가 신청이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, 집행기관에서는 부서별 업무 대행 체계를 재점검하여 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,
- 아울러 이월된 휴가의 관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기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